



POLICY

Proposal for a Change of the Name of the ‘과Gwa (Academic Department)’ Operated by the Colleges to the ‘학과Haggwa (Academic Department)’ : School Regulations and Higher Education Act

Bon-Kyeong KOO¹, Hyun Ho SUNG², Min Woo LEE³¹Medical Laboratory, Samsung Medical Center, Seoul, Korea²Department of Clinical Laboratory Science, Dongnam Health University, Suwon, Korea³Institute of Health Science, College of Health Science,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전문대학에서 운용 중인 ‘과’ 명칭을 ‘학과’로 변경 제안: 학칙과 고등교육법

구본경¹, 성현호², 이민우³¹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검사실, ²동남보건대학교 임상병리학과, ³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과학연구소

ARTICLE INFO

Received May 14, 2024

Revised June 5, 2024

Accepted June 15, 2024

Key words

Academic department

Associate degree

College

Higher education act

School regulations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hange the ‘과gwa (academic department)’ operated by the college to the ‘학과haggwa (academic department).’ Although they are in a lower order in the legal system, “the Regulation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University and College” and “the Public Notice on the Establishment of a 3-year Course at College” use ‘학과haggwa’ regardless of the type of school. On the other hand,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er Education Act” use ‘과gwa’ for colleges. The department name can be changed from ‘과gwa’ to ‘학과haggwa’ through a revision of school regulations in promoting the establishment of a major and the operation of the curriculum. In this study,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operate the name of ‘학과haggwa’ in an associate degree course or higher.

Copyright © 2024 The Korean Society for Clinical Laboratory Science.

서론

학과와 과에 대한 명칭은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9740호)」 제48조(학과 및 학점제 등), 「고등교육법(법률 제20250호)」 제41조(목적)·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제51조의2(유치원 부설), 「고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227호)」 제54조(교육과의 설치)·제57조(전문대학의 수업연한)·제58조

의3(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제58조의5(의료인 양성과의 지정 등)·제62조의3(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 학위심화과정),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제34455호)」 제2조의2(대학원 등의 설치기준),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19-183호)」 제3조(설치기준)에 나와 있다[1-5]. 전문대학의 ‘과’ 명칭의 경우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과’로 표기하고 있으며, 「대학설립·운영규정」이나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는 ‘학과’로 쓰고 있다.

한자문화권인 한국·일본·대만에서, 법령상 행정용어인 학

Corresponding author: Min Woo LEE

Institute of Health Science, College of Health Science, Korea University, B-dong

Hana-Science Building, 145 Anam-ro, Seongbuk-gu, Seoul 02841, Korea

E-mail: leemw@korea.ac.kr

ORCID: <https://orcid.org/0000-0003-1703-0284>

교 종류와 '학과(전공)'는 표현이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학교 종류의 경우 한국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2~4년제)·대학 명칭은 일본에서 소학교·중학교·고등학교·단기대학(2~3년제)·대학으로, 대만은 소학·중학·고급중학·전과학교(중졸 후 5년제, 고졸 후 2년제)·과학기술대학(4년제) 및 대학으로 명시하고 있다[6]. 교육과정 단위인 '학과'는 한국의 경우 고등학교에서 과, 전문대학에서 과, 교육대학에서 과, 대학 및 대학원에서 학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고등학교에서 과, 전문대학에서 과·전공과, 교육대학에서 학과, 대학에서 학과, 대학원에서 연구과를 쓰고 있다. 대만은 '학과'에 해당하는 명칭을 고등학교에서 과, 전문대학에서 계, 교육대학에서 학계, 대학 및 대학원에서 학계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에서 단과대학 성격인 대학의 경우 일본은 학부, 대만은 학원(석사·박사학위 과정 포함)으로 표현하고 있다.

'학과'는 학과명, 학과 소개, 학과 정보, 학과 종류, 신설 학과, 계약 학과, 유망 학과, 이색 학과 등에 사용되며 국민에게 잘 알려진 사회 통념상 표현이다. '학과'는 교수연구 및 학생모집의 행정상 구분한 학술의 분야를 지칭한 것이다.

정부는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는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정비해 가고 있다. 전문대학의 위상 제고 및 사기진작과 관련하여 1991년 임상병리 등 8개 과를 3년으로 수업연한 연장, 1997년 '전문학사' 학위 수여 실시, 1998년 전문대학 교명에 '전문' 삭제 가능, 2002년 '3년제 과' 확대, 2008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도입, 2009년 전문대학 학장에서 '총장' 사용 가능 등의 각종 규제를 철폐하였다. 2011년에는 간호과 수업연한을 4년으로 일원화하였다[7]. 또한 OO초등학교나 OO중학교, OO고등학교, OO교육대학교, OO대학교 등과 같이 전문대학에도 '교'를 붙여 대학교 명칭을 사용 가능토록 하였다. 영문 명칭의 경우 2011년에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전문대학의 영문을 'college'로 통일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나[8], 별다른 규제 법규가 없는 관계로 전문대학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college 외에도 university, college university, university college를 사용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전문대학이나 교육대학의 과정에 '과'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대학의 4년제 과정을 일컫는 '학과' 명칭을 쓰는 것이 허용되는 것인지 대해서 해석상 명확하지 않다. 2022년 국민신문고에 민원 접수된 "고등교육법 제50조의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58조에 있는 전문대학에서 운용하는 과 명칭에서 학과로 변경" 건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에 따라 전문대학이 전공의 설치와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학칙 개정'을 통해 '과'에서 '학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2022년 4월 14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204-0398509, 2022년 6월 24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B-2206-0013005) [9]. 교육부의 답변 내용은 "대한임상검사과학회 발전세미나(2022년 7월 2일, 서울) [10], 한국임상병리학과교수협의회 정기총회(2022년 7월 13일, 경주)"에서 발표되었으며 학칙 개정을 통해 임상병리학과로 개칭토록 독려하는 내용이었다.

전문대학에서 'OO과' 명칭에서 'OO학과'로 통일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배경은 첫째, 전문학사과정·학사과정·전공심화과정이 병존하는 상황에서 같은 '학과' 간의 학과명이 상이하고 둘째, '학과'를 담당하고 있는 보직교수의 명칭이 학과장이지만 학과명의 'OO과'로 혼란하며 셋째, 전문대학의 위상의 변화로서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대학원 설치의 본격화,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 학제의 자율화, 일학습병행제 등이 있다[11]. 발음에서 혼동이 있지만 '과(科)'는 전문 부서나 분야, 과목에서 쓰이며 '과(課)'는 사무 부서나 행위, 과정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대학에서 운용 중인 '과' 명칭을 '학과'로 변경에 있어서 학칙 개정을 통해 진행될 수 있음을 공유하며, 이에 따른 교육환경에서 형평성을 도모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에 있다. 또한 법령과 관련하여 "전문학사 이상 학위과정에 학과를 설치하는 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과로 변경하는 안, 의안번호 2468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본 론

1. 전문대학에서 운용하는 '과' 명칭 또는 '학과' 사례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제, 3년제와 4년제가 있다. 2002년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여건을 갖춘 전문대가 희망할 경우, 2년 인 수업연한을 3년으로 연장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3년제 과정으로는 인문사회계열의 관광·사회복지·경영·유아교육·유아특수보육·아동보육, 자연과학계열의 호텔조리·식품영양·화장품·임상병리·방사선·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치료·치기공·치위생·보건행정·안경·응급구조, 공학계열의 건축·기계·자동차·항공정비·소방방재·게임콘텐츠·사이버보안·전산·정보통신, 예체능계열의 극작·문예창작·디지털영상디자인·산업디자인·패션디자인·실용음악·만화창작·영화영상 등이 있다.

간호사는 의료인 종별에 포함되는 직종이다. 2016년 「고등

교육법」 제50조의3(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에 의거하여 전문대학 간호교육과정이 3년제에서 4년제로 확대되었다. 전문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한 자는 대학과 같은 학사학위를 수여받지만, 학력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대학에서 간호교육의 수업연한이 4년으로 일원화되어 교육과정의 명칭을 ‘과’에서 ‘학과’로 개칭한 공식적 첫 사례이지만[7], 2015년 이전에 일부 전문대학에서 ‘학과’ 명칭을 붙인 안경광학과(일본의 경우 안경과/광안경과 등, 대만은 시광계 사용), 산림복지학과 등도 있었다.

전문대학 수(130곳)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파악되었으며[7], 과정 수의 경우 2024년도 전문대학교 전공별 개설대학 입학상담 자료집에서 계열·영역·분야 중 분야에 해당하는 109개를 기준으로 삼았다[12]. 사례 추출은 분야 중에서 임의적으로 ‘임상병리과 및 임상병리학과’를 선정하였으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대학알리미) 등을 통해 취득되었다[13]. 임상병리과 개설 전문대학은 24곳이며, 학칙 개정하여 임상병리학과로 변경한 곳[14]은 대경대학교(2022년 3월), 동강대학교(2022년 3월), 대구보건대학교(2022년 4월), 동남보건대학교(2022년 5월), 광주보건대학교(2022년 5월), 안산대학교(2023년 3월), 대전보건대학교(2024년 5월)로 7곳이었다(Table 1). 특히 광주보건대학교와 대구보건대학교의 경우 전 계열의 교육과정을, 대전보건대학교와 동남보건대학교는 대다수 교육과정을 ‘과’ 명칭에서 ‘학과’로 변경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2. “전문학사 이상 학위과정에 학과를 설치하는 신설 안”

「고등교육법」 제19조(학교의 조직)에 제3항을 신설하여 ‘학과’는 전문학사 이상 학위과정에 설치하고,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학교의 조직을 기존의 학과·학부 등에서 학과·학부·과·전공 등으로 명시한다면 동법 및 시행령에서 혼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Table 2).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공 교육과정”으로 변경하는 안

1) 교육대학

한국의 교육대학의 경우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과정을 ‘교육과’라고 묶어서 통칭하지만, 일본이나 대만의 교육대학은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사범대학처럼 교과목별로 ‘학과’를 붙여서 운영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41조(목적) 제3호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교육과의 설치)에 있는 ‘교육과’를 ‘교원 양성 학과’로 변경한다. 교육대학의 경우 초등교육과는 초등교육학과로, 심화과정인 초등국어교육과는 초등국어교육학과(전공)로 바꾸고, 교육대학원의 세부전공인 초등국어교육학과(전공)로 사용하면 될 것 같다.

2) 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4항·제51조(유치원 부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전문대학의 수업연한) 제1항 및 제2항·제58조의3(재직경력)이 없

Table 1. Dualized name ‘department of clinical laboratory science’ operated by the colleges

Department name	College name
‘과gwa’ (17/24)	경남정보대학교, 경북대학교, 김해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마산대학교, 서영대학교(광주캠퍼스), 서영대학교(파주캠퍼스), 송호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신성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진주보건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혜전대학교
‘학과haggwa’ (7/24)	광주보건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안산대학교

Table 2. Open a academic department only in a associate degree course or higher (proposed amendment to the 「Higher Education Act」)

Present	Proposal
<p>고등교육법 제19조(학교의 조직) ① 학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p> <p>② 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으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한다.</p> <p><제3항 신설></p> <p>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학교의 조직) ② 대학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하 “학과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p>	<p>고등교육법 제19조(학교의 조직)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학과는 전문학사 이상 학위과정에 설치한다.</p> <p>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학교의 조직) ② -----학과·학부·과·전공-----</p>

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 제1항·제58조의5(의료인 양성과의 지정 등)에 있는 '과'를 '학과'로 변경하면 될 것 같다. 전문대학은 '과'와 '학과'를 혼용하고 있기에 특성에 맞게 학과·과 또는 전공을 표기하면 된다.

(1) 「고등교육법」 제50조의2, 제51조의2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에 있는 '과' 명칭을 '학과'로, 제51조의2(유치원 부설)에 전문대학의 유아교육과 명칭은 유아교육학과로 변경해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Table 3).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 제58조의3, 제58조의5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전문대학의 수업연한) 및 제58조의3(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 학위심화

과정)에 있는 '과' 명칭을 '학과'로, 제58조의5(의료인 양성과의 지정 등)에 있는 '의료인 양성과' 명칭을 '의료인 양성 학과'로 변경해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Table 4).

(3)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는 총 4조로 구성되어 있다. '학과' 명칭은 고시 전반에 걸쳐 표현하고 있으나, 제4조(설치기준) 제3항의 '과'는 오타로 보인다(Table 5).

3) 원격대학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의3(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 학위심화과정)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 속하는 과, 설치한 해당 과, 과와 관련된 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 속하는 학과, 설

Table 3. Change the name of '과gw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학과haggwa' in the 「Higher Education Act」

Present	Proposal
고등교육법 제4절 전문대학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의 전공심화과정에 한정하여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4절 전문대학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 ----- -----
제51조의2(유치원 부설) 전문대학(유치원 교사 양성을 위한 과가 개설된 전문대학에 한정한다)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 양성을 위한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치원을 부설할 수 있다.	제51조(유치원 부설) ----- -----학과----- ----- -----

Table 4. Change to the name of '과gwa' to '학과haggwa'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er Education Act」

Present	Proposal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절 전문대학 제57조(전문대학의 수업연한) ① 법 제48조에 따라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간호과·방사선과·임상병리과·물리치료과·치기공과·치위생과·작업치료과·어업과 및 기관과로 한다. ② 전문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 외의 과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절 전문대학 제57조(전문대학의 수업연한) ① ----- ----간호학과·방사선학과·임상병리학과·물리치료학과·치기공학과·치위생학과·작업치료학과·어업학과 및 기관학과----- ② ----- -----학과 외의 학과----- -----
제58조의3(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 ① 법 제50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란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인문사회계열에 속하는 과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50조의2 제4항에 따라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를 졸업할 것 2. 제1호의 과와 관련된 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를 졸업할 것	제58조의3(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 ----- -----학과 ----- 1. ----- ----- -----학과 ----- 2. -----학과와 관련된 학과----- -----학과----- -----
제58조의5(의료인 양성과의 지정 등)	제58조의5(의료인 양성 학과의 지정 등)

정이나 전문대학의 특정 과정의 경우 '학과'라는 표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 학교 내에서 '과'와 '학과'가 혼재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혼동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법의 일관성 측면에서 사용되는 '과' 단위를 '학과'로 표현을 정비하여 혼동을 줄이고자 함이라고 설명하였다 [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제41조 제3항 중 '하는 교육과'를 '하는 학과'로, 제44조 각 호의 부분 중 '교육과'를 '교육학과'로, 제50조의2 제4항 중 '과의'를 '학과의'로, 제51조의2 중 '과'를 '학과'로 개정하는 것을 담고 있다. 2023년 9월 25일 발의된 "의안번호 212468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제21대 국회의원 임기(2020.5.30~2024.5.29) 종료로 인해 자동적으로 폐기되었다.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대학에서 운용하는 '과' 명칭을 '학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다. 법체계상으로는 하위순위이지만, 「대학의 설립운영규정」과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는 학교 종류에 관계없이 학과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전문대학에 '과'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학과명은 전공 신설 및 교육과정 운영을 추진함에 있어 학칙 개정을 통해 '과' 명칭에서 '학과'로 변경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학사 이상 학위과정인 학과 명칭으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Funding: None

Acknowledgements: None

Conflict of interest: None

Author's information (Position): Koo BK¹, 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 Sung HH², Professor; Lee MW³, Professor.

Author Contributions

- Conceptualization: Koo BK, Sung HH, Lee MW.
- Data curation: Koo BK, Sung HH, Lee MW.
- Formal analysis: Koo BK, Sung HH, Lee MW.
- Methodology: Koo BK, Sung HH, Lee MW.
- Software: Koo BK, Sung HH, Lee MW.
- Validation: Koo BK, Sung HH, Lee MW.
- Investigation: Koo BK, Sung HH, Lee MW.
- Writing - original draft: Koo BK, Sung HH, Lee MW.
- Writing - review & editing: Koo BK, Sung HH, Lee MW.

Ethics approval

This article does not require IRB/IACUC approval because there are no human and animal participants.

ORCID

Bon-Kyeong KOO <https://orcid.org/0000-0002-2759-5919>

Hyun Ho SUNG <https://orcid.org/0000-0002-7218-0835>

Min Woo LEE <https://orcid.org/0000-0003-1703-0284>

REFERENCES

1. Ministry of Educatio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ct no. 19740, 2023 Dec 24 [Internet].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cited 2024 June 1]. Available from: <https://www.law.go.kr/LSW//lslInfoP.do?lsiSeq=255393&ancYd=20231024&ancNo=19740&efYd=20240425&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2. Ministry of Education. Higher education act. Act no. 20250, 2024 Feb 13 [Internet].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cited 2024 June 1]. Available from: <https://www.law.go.kr/LSW//lslInfoP.do?lsiSeq=260177&ancYd=20240213&ancNo=20250&efYd=20240814&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3. Ministry of Education.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er education act. Presidential decree no. 34227, 2024 Feb 20 [Internet].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cited 2024 June 1]. Available from: <https://www.law.go.kr/LSW//lslInfoP.do?lsiSeq=260663&ancYd=20240220&ancNo=34227&efYd=2024082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4. Ministry of Education. Regulation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university and college. Presidential decree no. 34455, 2024 Apr 30 [Internet].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cited 2024 June 1]. Available from: <https://www.law.go.kr/LSW//lslInfoP.do?lsiSeq=262019&ancYd=20240430&ancNo=34455&efYd=20240430&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5. Ministry of Education. Public notice on the standards for establishment of a 3-year course at college. Notice no. 2019-183, 2019 Jul 1 [Internet].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cited 2024 June 1]. Available from: <https://www.law.go.kr/LSW/admRulLsl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179932>
6. National Curriculum Information Center. World's curriculum [Internet].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cited 2024 June 1]. Available from: <https://ncic.re.kr/mobile.wdi.map.do>
7. Higher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Center. Introduction to university college [Internet].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College Education [cited 2024 June 1]. Available from: <https://www.kcce.or.kr/web/kcceIntro/webVision.do>
8. University News Network. Colleges use 'university' name from May [Internet]. Korea University News Company [cited 2024 June 1]. Available from: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69331>
9. Public Participation Portal (People's Proposals). Changing the '과'

- gwa' operated by colleges to '학기haggwa' (No. 2AB-2206-0013005) [Internet]. Korea President's Office [cited 2024 June 1]. Available from: <https://withpeople.president.go.kr/npps/rqs/rst/rstDetailTPP.do>
10. Korea Society for Clinical Laboratory Science. 1st development seminar [Internet]. Korea Society for Clinical Laboratory Science [cited 2024 June 1]. Available from: <https://www.kscls.or.kr/board/list.html?code=past2>
 11. GHU Square. 2022 announcement of the change in the name of the department [Internet]. Gwangju Health University [cited 2024 June 1]. Available from: <https://www.ghu.ac.kr/Notice/category12/18/read/79960>
 12. Admissions Information. 2024 admissions consultation materials book [Internet].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College Education [cited 2024 June 1]. Available from: <https://www.procollege.kr/web/board/26108.do?mode=view&schBcode=&schCon=&schStr=&pageIndex=1&pageUnit=15&idx=81349>
 13. Higher Education in Korea. Standard classification information [Internet].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cited 2024 June 1]. Available from: <https://www.academyinfo.go.kr/mjrinfo/mjrinfo0460/doInIt.do>
 14. Dongnam Square. 2022 revision of school regulations [Internet]. Dongnam Health University [cited 2024 June 1]. Available from: <https://www.dongnam.ac.kr/preview/main/285/58913/preview.do>
 15. Government Legislative Support Center. Introduction to the government legislative system [Internet].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cited 2024 June 1]. Available from: <https://www.lawmaking.go.kr/lmGde/govLm>
 16. Bill Information. Partial amendment to the higher education act (No. 24681) [Internet]. National Assembly [cited 2024 June 1]. Available from: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R3R0P9Q1O1P1N3O4W2U4V1T9U9S2